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

당사가 수탁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76외 1필지에 소재한 신탁부동산(광고더퍼스트 지식산업센터 801호, 802호)]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매를 실시합니다.

1. 공매대상 물건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76외 광고더퍼스트 지식산업센터

물건 번호	공매부동산의 표시			이용상황	비 고
	호수	대지면적	전유면적		
1	801	19.2974	65.6718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2	802	18.1825	61.8775		

※ 공매대상 물건 세부 현황 및 공매관련 기타자료는 당사 홈페이지(www.koramco.com) 및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www.onbid.co.kr)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2. 공매일시 및 공매예정가격

1) 공매일시

회차	공매일자	공매시간	비고
1차	2026년 [4]월 [06]일	10:00 ~ 12:00	진행 완료
2차		14:00 ~ 16:00	
3차	2026년 [4]월 [09]일	10:00 ~ 12:00	
4차		14:00 ~ 16:00	
5차	2026년 [4]월 [14]일	10:00 ~ 12:00	
6차		14:00 ~ 16:00	
7차	2026년 [4]월 [17]일	10:00 ~ 12:00	
8차		14:00 ~ 16:00	
9차	2026년 [5]월 [27]일	10:00 ~ 12:00	금회 진행

2) 공매예정가격

(단위 : 원, vat포함)

물건 번호	호수	9회차
1	801	236,500,000
2	802	220,375,000

3. 공매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www.onbid.co.kr)(1588-5321)

4. **공매방법** : 일반경쟁입찰(단독응찰도 유효)

- 1) 본 공매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이용한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2) 온비드(onbid) 이용방법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개찰은 온비드(onbid) 시스템에서 전자개찰 합니다.
- 4) 최고 동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 입찰자들을 대상으로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5) 공매 유찰시 다음 회차의 공매 예정시간 1시간 전까지 직전 회차의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 수의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계약보증금 수납접수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 9회차 공매까지 유찰될시 9회차의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 수의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계약보증금 수납접수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 6) 상기 공고된 공매는 당사의 사정에 따라 전체 차수를 진행하지 않고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1)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onbid)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2)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예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시 입찰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6.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 1) 낙찰자는 낙찰 후 5일 이내에 당사 소정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 후 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 2) 관계법령에 의거 매각대상물건의 매매계약허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낙찰 후 관계법령에 의거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 10%(입찰보증금 대체 가능),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까지 잔금 90%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대상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위 계약금 및 잔금 납부시점에 그 비율(계약체결시 : 10%, 잔금 지급시 : 90%)에 맞추어 매매대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비용과 토지거래계약허가, 부동산거래신고, 용도변경 등 인허가의 책임 및 추가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신고 등 행정절차의 누락에 따른 과태료(매도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포함) 또한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7. 소유권 이전

- 1) 입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공매물건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적·법률적 하자 및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사항은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 2) 공매물건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위탁자(또는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탁자에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무유예결정(워크아웃개시)이 있거나 공매물건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및 기타 매매완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부연하면, 잔금 지급일 전에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 중지 또는 금지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이 제기되고 잔금 지급일까지 이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없는 경우 및 매매완결에 장애가 될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함)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기지급한 매매대금(이자금을 제외한다)의 반환 이외에 매수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또는 비용의 지급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3)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4)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등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매수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공매물건과 관련한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 6) 공매물건에 존재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매수자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 7) 공매목적물에 대한 명도는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부연하면, 공매목적물의 명도 관련 일체의 법적 분쟁 및 민원 등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수탁자는 위 명도와 관련하여 매수자에게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8)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법률관계의 정리, 명도, 철거, 수거, 인도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9) 매수자는 잔금을 전액 납부하고, 본 공매공고 및 기타 매매계약에서 정하여진 매수인의 의무(잔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손해금의 지급 등)를 이행완료한 후,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1) 매도자는 매각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① 매각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물적 하자
 - ②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등을 포함한 매각부동산에 존재하는 일체의 권리상의 하자 및 제한
 - ③ 행정상(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 권리제한
 - ④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 ⑤ 등기부상 목록과 현황과의 상이
 - ⑥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 ⑦ 민법 제569조 내지 581조에 정한 매도자의 담보책임
- 2) 공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공매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제세공과금(단, 공매목적물에 관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에서 납부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수탁자에 의해 신탁재산에서 납부된 제세공과금은 제외함), 준조세, 각종 부담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원, 관리비, 인도 및 명도(임대차 및 거주자 등 제권리관계),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및 지상권, 유치권 등) 및 공매목적물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정리는 매도자에게 부과된 것이라도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며, 이에 대해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본 유의사항 2)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매목적물에 관하여 2025. 09. 22.자 압류[권리자 수원시]가 존재하나, 해당 압류에 한해서는 당사는 공매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이를 해소할 예정인바, 매수인은 이에 대한 해소 및 인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4) 공매목적물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

